

의안번호	2213051
의 퇴 인	이훈기의원
회 답 일	2025.11.28.
추계번호	25D470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정의)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에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포함	
2	안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구조금의 종류에 상해구조금을 포함	
3	안 제22조(구조금액)	상해구조금을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3	안 제22조(구조금액)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피해 및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며,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되는데, 구조금액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또는 피해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일정 범위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표 1]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월급여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48개월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8개월
3.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8개월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주: 단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음

[표 2] 장해구조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월급여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												
장해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 12급	13, 14급
개월 수	48 개월	44 개월	38 개월	34 개월	28 개월	24 개월	20 개월	14 개월	10 개월	5 개월	4 개월	3 개월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표 3] 중상해구조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각각의 경우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6/6
2. 1에 해당하는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5/6
3. 위의 두 경우 외의 경우	3/6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4]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2조 관련)
 주: 단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피해 및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구조금의 지급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최근 4년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연도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지급액	구조금 종류별 지급내역
2021	9,792	유족구조금 144건 지급, 장해구조금 25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2건 지급
2022	9,503	유족구조금 138건 지급, 장해구조금 23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8건 지급
2023	8,990	유족구조금 111건 지급, 장해구조금 14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4건 지급
2024	7,910	유족구조금 100건 지급, 장해구조금 17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9건 지급

자료: 2025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자료 II-1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